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
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.

매도인 : **아시아신탁 주식회사** (서명 또는 인)
 신고인 매수인 : (서명 또는 인)
 개업공인중개사 : (서명 또는 인)
 (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